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백업시스템 및 서버구축 용역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 결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이라 한다)는 2020. 12. 2. 기 사용 중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별도로 분리된 백업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 “장애인체육회 백업시스템 및 서버구축 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기초금액 총 59,000천원의 용역을 공고하였다.

[표] 장애인체육회 백업시스템 및 서버구축 입찰공고 현황

(단위 : 천원)

입찰공고일	공고기간	추정가액	공동도급 허용 여부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부여 여부	비고
2020. 12. 2.	2020.12.02. ~ 2020.12.09.	59,000	부	부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한 “장애인체육회 백업시스템 및 서버구축 용역”에 대해 개찰한 결과 적격심사도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인 ♣♣♣♣시스템(주)(대표 RRR)과 2020. 12. 11. 계약(계약금액 51,945천원)을 체결하였다.

2.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고,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에 관한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와 나)”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리고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입찰공고 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2017. 1. 5. 봉강 황전터널 등 8개소 운영관리용역(전라남도 공고 제2017-10호) 입찰공고서를 보면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단독수행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에 대하여 모든 업체에 만점을 부여 합니다. 라고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한 바 있다.

그리고 ○○○○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¹⁾에서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1) ○○○○(공동도급허용 및 공동수급시 지역점수 부여), ○○○○(공동도급허용 및 공동수급시 지역점수 부여), ○○○○(공동도급허용 및 공동수급시 지역점수 부여)

만, 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 등 일부 자치단체²⁾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위 용역을 입찰공고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되, 불가피하게 공동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위 용역 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하여 과업 수행을 하는 데에 곤란한 사유가 없어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위 용역입찰 공고문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2020. 12. 2. 위 용역 입찰 공고문에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라고 공고하였다.

더욱이 위 용역 건에 대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는 사유로 임의 판단하여 이를 공고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불허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전라남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에 역차별과 사실상 입찰 참여 의지가 없게 할 우려를 발생하게 하였다.

3.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 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2) ① ○○○시 공고 2017-2328 2018년 ○○○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입찰참가자 모두 만점을 부여 ② ○○○○ 제2017-499호 입찰공고 : 마.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만점을 부여 ③ ○○○○ 제2017-1974호 입찰공고서 :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④ ○○○○ 2018년 청소용역 입찰공고 : 해당 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심사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위 용역 입찰 공고문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를 7일 이내에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2020. 12. 2. 위 용역 공고 후 (주)KKK KKKK 등 5개 업체에서 투찰을 하자, 같은 해 12. 9. 개찰하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1순위 업체인 ♣♣♣♣시스템(주)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업무담당자는 처음 해 보는 업무이고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적격심사서류를 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적격심사도 없이 같은 해 12. 11. 위 ♣♣♣♣시스템(주)와 계약(계약금액 51,945천원)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제2항’과 같은 공동도급 불허와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잘못된 공고와 ‘제3항’과 같은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다시 적정하게 공고하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면 1순위 업체가 낙찰되지 못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용역을 입찰공고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되, 불가피하게 공동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 ②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를 7일 이내에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③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기관경고

제 목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이라 한다)는 「찾아가는 생활서비스팀 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2.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9조 및 「찾아가는 생활서비스팀 운영지침」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적발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서비스팀 운영지침」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장애인생활체육팀장이나 지도자 등이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신분변동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소속 직원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 태만이 발생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비위에 해당하면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는 [표 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상 복무 점검 현황”과 같이 2020. 9. 17.부터 같은 해 9. 22.까지 5일 동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거점 근무지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CCC 등 9명이 거점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찾아가는 ○○○○○ SSS에게 2020년도 근무평정에서 10점을 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2020. 12. 7. 찾아가는 ○○○○○ SSS는 무단 이탈로 적발된 위 CCC 등 9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20년도 근무평정 시 10점 감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거점 근무지 현장평가 보고’ 건을 기안하여 ○○○○ NNN의 검토 후 사무처장 LLL가 결재하였다.

한편 2020년도 근무평정에서 위 무단 이탈자 중 위 CCC만 9점 감점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10점 모두 감점 처리를 하였다.

[표 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상 복무 점검 현황

연번	성명	적발일자	거점근무지	사유	비고
1	***	2020. 9. 17.(목)	○○○	사전 보고 없이 개인용무 등으로 근무지 이탈	
2	***	2020. 9. 17.(목)	○○○		
3	***	2020. 9. 17.(목)	○○○		
4	***	2020. 9. 17.(목)	○○○		
5	CCC	2020. 9. 18.(금)	○○○		
6	***	2020. 9. 18.(금)	○○○		

7	***	2020. 9. 18.(금)	○○○		
8	***	2020. 9. 18.(금)	○○○		
9	***	2020. 9. 18.(금)	○○○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는 소속직원 중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케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도

찾아가는 ○○○○○○ ○○○○○○의 정보교류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0. 10. 2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1박 2일 동안 ‘○○○○○의 역량강화 교육’을 전라북도에서

○○○○ LLL, ○○○○ NNN 등 본회 직원 4명과 ○○○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던 중

역량교육 첫날인 2020. 10. 29. 22:00분경 찾아가는 ○○○○○○ SSS가 배정 받은 숙소³⁾에서 위 ○○○과 ○○○ 4명이 모여 음주를 한 이후

같은 날 22:30분 경부터 익일인 02:00분 경까지 술에 만취한 나주장애인승마 협회에서 근무하는 ○○○○○○ CCC이 [표 2] “CCC의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현황”과 같이

찾아가는 ○○○○○○ SSS 등 같은 소속직원 4명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및 폭언 등을 하여

위 ○○ SSS가 역량강화 교육 마지막 날인 같은 해 10. 30. 조식 이전(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함)에 ○○○○ LLL와 ○○○○ NNN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위 ○○ SSS가 같은 해 11. 3. 가해자 CCC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본인의 경위서와 [표 2]의 가해 대상 직원 3명의 경위서 등을 받아

3) 모악산호텔

같은 해 11. 4. 17:00분경 사무처장실에서 ○○○○ LLL, ○○○○ NNN, ○○○○의 JJJ 및 HHH 주임, 찾아가는 ○○○○○ SSS 등 5명이 모인 가운데

○○○○ LLL는 ○○○○○ SSS가 위 사건을 합당한 방법으로 제대로 해결해주길 요청하였지만 ○○○○팀 안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 18:00분경 ○○○○팀사무실에서 같은 팀의 JJJ 및 HHH 주임, ○○○○○ SSS 등 4명이 모인 가운데

○○○○ NNN는 찾아가는 ○○○○○ SSS에게 사무처 안에서 해결하기보단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신청하여 해결하라고 하였고,

같은 해 11. 5. 11:00분경 장애인체육회 내에 있는 미팅 룸에서 ○○○○팀 JJJ 주임, ○○○○○ SSS 등 3명이 모인 가운데

○○○○장 WWW은 ○○○○○ SSS가 위 사건에 대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내용을 전달하자 공식적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라고만 하였다.

이로 인해 ○○○○○ SSS는 역량강화 교육 기간 중에 발생한 CCC의 심한 욕설 등 가해 사실에 대해 상급자들의 소극적인 행위로

마지 못해 2020. 11. 19. 팀을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감과, 혹여나 있을 불이익을 생각하여 ○○○○ CCC의 가해로 피해를 받은 지도자들을 다독이고 근무평정 시 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인화 단결과 협조성에서 10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1. 20. ○○○○○ SSS는 역량강화 워크숍 시 물의를 야기한 ○○○ CCC에 대해

2020년 근무평정 시 10점을 감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 역량강화 관련 경위서 제출 공문’을 기안하여 ○○○○ NNN의 검토 후 사무처장 LLL로 부터 결재를 득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도 근무평정에서 10점 감점을 하기로 하였으나 6점만 감점하였다.

그로 인하여 근무지 무단 이탈자 ○○○○○ CCC 등 9명과 역량강화 워크숍 시 물의를 야기한 ○○○○○ 위 CCC은 징계 등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근무평정 부적정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부담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20년 ○○○팀 근무평정 계획(안)」[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르면 전라남도 ○○○○○ 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근태관리에 무단결근 시 1회당 10점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 11. 20. 「○○○○○ 역량강화 관련 경위서 제출 공문」에 역량강화 워크숍 시 물의를 야기한 ○○○○○ CCC에 대해 근무평정 시 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인화 단결과 협조성⁴⁾에서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회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자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평정 감점 사유에 해당되면 이를 가감없이 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같은 소속 기획총무팀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팀)는 ○○○○○ CCC이 [표 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상 복무 점검 현황”과 같이 2020. 9. 18. 거점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근무평정 시 10점을 감점해야 한다는 사실과

역량강화 교육 시 부적절한 언행,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근무평정 시 추가로 10점을 감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근무평정에서 총 20점 감점

4) 공문에는 10점 감점만 적시되었으나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의 찾아가는 ○○○○○을 통해 해당 10점 감점은 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인화 단결과 협조성에서 10점을 감점한다고 설명

을 반영해야 하는 데도

2020. 12. 11. 15:00분 경 찾아가는 ○○○○○ SSS가 위 CCC에 대한 근무
평정 시 감점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위 CCC의 재계약을 위해 한번 더 기
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평가자인 찾아가는 ○○○○○ SSS와 확인자인 ○○○○ NNN
는 [표 3] “CCC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부적정 부여 및 재산정 현황”과 같이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위 CCC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 안되도록 각 35점
과 36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3] CCC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부적정 부여 및 재산정 현황

평정요소	배점	착 안 점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평정점수 결과			전라남도 감사관 재산정
			평가자 (50%)	확인자 (50%)	소계	
1. 책임감	20	○ 맡은 바 담당업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노력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 ○ 교육 미수료 시 1회당 3점 감점	7	7	14	14
2. 인화 단결과 협조성	20	○ 지도자로서 동료, 상사에 협조하는 정도 ○ 지도자간 인화단결 및 화합분위기 조성	7	7	14	<u>10(20-10)</u>
3. 봉사자세	20	○ 동호인에 대한 봉사자세 ○ 친절, 성실한 지도자세	8	8	16	16
4. 프로그램	20	○ 프로그램의 작성 능력 ○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	8	8	16	16
5. 근태관리	20	근태관리 점수기준	5	6	11	<u>10(20-10)</u>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35	36	71	<u>66</u>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21. 11. 11. 감사일 현재 위 CCC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표에서 해당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인화 단결과 협조성에서 10점 감점과 근태관리에서 10점
감점 등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정당하게 재산정한 결과 [표 3] “CCC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점수 부적정 부여 및 재산정 현황”과 같이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66점

으로 확인되었다.

그로 인하여 위 CCC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정당하게 부여하였더라면 위 CCC의 근무성적 평정점수 합계점수가 66점이 되어 위 CCC에 대한 재계약 여부 심의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하였을 것이고,

위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위 CCC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역량강화 교육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킨 전력을 확인하게 되어 재계약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위 장애인체육회는 위 CCC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 점수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1. 1. 1. 재계약(계약기간 2021. 1. 1. ~ 2021. 12. 31.)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등 소속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적발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소극적으로 조치하지 마시고,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등에 맞게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전라남도

주의·개선요구

제 목 합격자 결정기준 임의 적용으로 인한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이라 한다)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등에 종사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계약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0. 12. 18.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모집 공고하여

2021. 1. 4. 서류전형에서 DDD 등 2명이 ‘적격’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1. 7. 면접전형에서 위 DDD 등 2명이 266점으로 동점자가 되자 면접전형위원회에서 위 DDD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해 1. 12. 위 DDD과 채용계약(계약기간 2021. 1. 12. ~ 2021. 12. 31., 보수 월 기본급 2,055천원)을 체결하였다.

2. 공고문에도 없는 합격자 결정기준 임의 적용으로 인한 부당 채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2020. 11.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제22조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전형별 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절차 및 동점자 처리 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이를 경험

· 상황 · 발표 등 구조화된 면접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채용 공고문에 채용포기 등 채용 불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위 공고문에 면접전형 합계점수 채점 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이 없어 면접전형위원들이 면접심사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2021. 1. 7. 면접전형에서 위 DDD 등 2명이 266점으로 동점자가 되자 면접전형 위원들에게 [표 1] “면접전형위원 최종 합격자 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발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리고 나서 면접전형위원들은 위 DDD 등 2명 중 우위에 있는 자를 거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협의 한 후

[표 1] “면접전형위원 최종 합격자 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5명 위원 중 1명 위원이 PPP에게 나머지 4명 위원이 DDD에게 거수를 하였고 그 결과 거수를 많이 받은 위 DDD를 최종합격자로 심의 · 의결하게 하였다.

[표 1] 면접전형위원 최종 합격자 결정 부적정 현황

면접전형 대상자	위원장	위원				합계 (최고, 최저 제외)	평균 점수	면접위원 최종선발 관련 거수 인원	면접위원회 최종합격 심의 의결 결과
	***	***	***	***	***				
PPP	88	<u>86</u>	<u>94</u>	88	90	266	88.67	1명	불합격
DDD	92	<u>72</u>	<u>96</u>	90	84	266	88.67	<u>4명</u>	<u>합격</u>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고문에 면접전형 결과 평가 대상자가 평가받은 총 합계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는 결정 기준이 없는데도

위 DDD 등 2명의 면접전형 대상자가 위원들로부터 평가받은 총 합계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로 집계하여 위 면접전형 대상자 2명의 합계점수가 266점으로 동일한 점수가 나오자 면접위원들이 거수로 위 DDD를 최종합격자로 심의·의결하게 하였다.

한편 위 면접전형 대상자 DDD 등 2명이 면접전형위원들로부터 평가받은 점수를 그대로 합계한 결과

[표 2] “면접전형 결과 합계점수 재산정 및 정당 순위 현황”과 같이 PPP의 합계점수가 446점으로 면접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DDD의 합계점수인 434점보다 12점이 높게 나와 PPP이 합격처리 되어야 했다.

그로 인하여 면접위원별 평가 점수를 그대로 집계하지 않아 PPP이 부당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불합격되어야 할 DDD이 합격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 2] 면접전형 결과 합계점수 재산정 및 정당 순위 현황

면접전형 대상자	위원장	위원				합계 (최고, 최저 제외)	평균 점수	면접위원회 최종합격 심의 의결 결과	면접위원 별 평가 점수 합계 재산정	정당 순위
	***	***	***	***	***					
PPP	88	<u>86</u>	<u>94</u>	88	90	266	88.67	불합격	446	1
DDD	92	<u>72</u>	<u>96</u>	90	84	266	88.67	합격	434	2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3. 면접전형 위원 선정 및 블라인드 심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전형위원 중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4조 관련 참고사항에 따르면 전형별 심사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심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면접전형 위원 위촉 대상자가 응시자의 출신학교나 직장 경력이 같을 경우 위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접전형 심사표에 응시자 개인이 특정되지 못하도록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음영처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위 응시자 DDD이 전라남도체육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차례에 걸쳐 채용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음이 지원서류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여

면접전형 위원 위촉 시 위 응시자가 근무했던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직원을 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 3] “면접전형 위촉 위원 소속 및 면접전형 대상자 직장 경력 동일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 AAA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표 3] 면접전형 위촉 위원 소속 및 면접전형 대상자 직장 경력 동일 명세

면접전형 위촉 위원			면접전형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직장 경력
***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장	PPP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2018. 1. 1. ~ 2018. 12. 31.)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이사		
***	호남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DDD	전라남도체육회(2017. 3. 1. ~ 2017. 12. 31., 2018. 9. 1. ~ 2018. 12. 31., 2019. 9. 1. ~ 2019. 11. 30.)
AAA	전라남도체육회	*****		
***	은광학교	교장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면접전형 위원들이 면접전형 심사표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직종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응시자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음영처리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면접전형 심사표에 응시자 개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2021. 1. 7. 면접전형 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 결과 면접전형에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채용계획에 동점자 처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전형 등에 블라인드 심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채용 계획(안)에 면접전형 합계점수 채점 방법과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채용 공고문에 반영하도록 하고(제도상 개선)
- ② 면접전형 위원 위촉 시 사전에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를 통해 응시자와의 근무경험 관계 등 이해당사자가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면접전형 심사표에 응시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성명을 음영처리하여 면접전형위원에게 위 심사표를 배부하는 등 채용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통보·주의요구

제 목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출장 및 여비를 지급하고,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2.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 정비 및 해외연수 업무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18. 7. 26.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범정부점검단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해외출장 제도개선 방안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전라남도(감사관)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2019. 3. 21.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전라남도 산하기관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등 8개 항목⁵⁾을 2019.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공문(감사관-3183)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전라남도(감사관)에서 공문으로 통보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등 위 8개 항목을 장애인체육회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정비하여

5)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서면심사 제한(대면심사 원칙), 세부심사기준 마련,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이해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의결 참여 제한,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

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2019. 상반기까지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등 자체 규정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등 위 8개 항목을 반영하여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2021. 11. 12.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등에 위 8개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세부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의 국제교류 및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해외연수가 [표 1] “2019년 장애인체육 해외연수 추진 현황”과 같이

전체 일정 중 ‘싱가포르체육회(3일 차, 반일)’ 방문 이외에는 당초 해외연수 취지에 반하는 ‘보타닉가든 방문’ 등 대부분이 선심성 관광으로 추진되는 등 장애인체육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 13,300천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2019년 장애인체육 해외연수 추진 현황

여행국가	기 간	연수비용 (천원)	여행내역		주요 일정
			인원 (명)	여행자	
싱가포르	2019.12.01. ~12.05 (3박 5일)	13,300	10	기획총무팀장 ***, 기획총무팀 *** 대리, 기획총무팀 *** 주임, 전문체육팀장 ***, 생활체육지도자 ***, ***, ***, ***, 장애인댄스스포츠협회 ***, 장애인력비협회 ***	(1일차) 싱가포르 도착 호텔 투숙 (2일차) 전 일정 관광 - 보타닉가든, 이슬람 사원 등 * 전신맛사지 90분 포함 (3일차) 기관방문 1, 관광 2 - 싱가포르체육회 방문 - 리버사파리, 마리나베이샌즈 (4일차) 전 일정 관광 - 센토사섬, 리버보트 등 (5일차) 귀국(싱가포르→무안)

자료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소속 임직원이 공무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2018. 12. 3.부터 2019. 12. 5.까지 [표 2] “장애인체육회 소속 임직원 공무상 국외여행 추진 현황”과 같이

소속 임직원이 공무상으로 국외여행을 하기 이전에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임직원에 대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장애인체육회 소속 임직원 공무상 국외여행 추진 현황

여행국가	기 간	여행내역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전 확인 여부
		인원 (명)	여행자	
홍콩	2018.12.03. ~12.06 (3박 4일)	3	○○○ ***, 기획총무팀 *** 주임, 전문체육팀 *** 대리	부
싱가포르	2019.12.01. ~12.05 (3박 5일)	4	기획총무팀장 ***, 기획총무팀 *** 대리, 기획총무팀 *** 주임, 전문체육팀장 ***	부

자료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무상으로 적립된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공무국외여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등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등 8개 항목을 반영하여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통보)
- ② 앞으로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여부 확인 및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통보·주의요구

제 목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급보조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직원 보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등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지급액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직급보조비 지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 1인을 둘 수 있으며 ○○○은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기본급, 상여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비적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를 집행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5조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

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준용 규정에 따라 8·9급에게는 145,000원을 4급 사무처장에게는 400,000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지급 상한액이 1,24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상위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는 ○○○의 활동수당에 대한 지급액 기준이 없는데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에 대한 활동수당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표 1] “○○○에 직급보조비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 10월부터 2021. 11. 12. 감사일 현재까지 ○○○의 장애인 체육업무 활동수당을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위 직급보조비 지급 상한액에서 1,760,000원을 초과한 월 3,000,000원씩 총 36차례에 걸쳐 111,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에 직급보조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0월까지)
집행액	9,400,000	36,000,000	36,000,000	30,000,000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에 장애인 체육업무 활동수당을 2018년 10월부터 2021. 11. 12. 감사일 현재까지 월 3,00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표 2] “○○○의 활동수당과 출장비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생활체육사업 등 간담회 명목으로 출장시 출장여비 855,88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다.

[표 2] ○○○의 활동수당과 출장비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0월까지)
집행액	113,330	565,9000	153,320	23,330

자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역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문화발전 기여 등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간담회 비용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06조에 따르면 예산과 결산회계, 지출계약 등 회계 관계 사무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⁶⁾을 준용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및 각종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등 임차료, 현수막, 상패제작 등을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으나 행사에 참여하는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의 식비는 급량비 단가인 8,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8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6) 개정 이후 「전라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0조에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경비의 집행 성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장애인체육회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는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간담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은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표 3] “장애인체육회 간담회 비용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이 불가한 사무관리비 등 4개 예산과목에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간담회 등을 사유로

2018년 10월부터 2021. 11. 12. 감사일 현재까지 체육회 직원들의 식비 및 외부인사들과의 식사비용으로 1인당 단가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총 108,815,3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3] 장애인체육회 간담회 비용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예산과목(통계목)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운영비
총 계	108,815,300	11,405,100	46,972,500	6,894,000	43,543,700
2018년	16,030,900	2,174,000	6,200,000	1,380,000	6,276,900
2019년	48,935,800	4,049,000	16,625,500	1,650,000	26,611,300
2020년	27,377,500	3,450,000	17,805,500	2,974,000	3,148,000
2021년 (10월까지)	16,471,100	1,732,100	6,341,500	890,000	7,507,500

자료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장애인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장애인체육회의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직급보조비 지급액 기준 없이 ○○○에게 부적정하게 직급보조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 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보)
- ② 앞으로 간담회 등을 사유로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이 불가한 예산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식사비용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